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처"를 삽입하고, 각호중
본청 '893명'을 '894명'으로, 직속기관 "864명"을 "910명"으로
하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사무처 57명

제3조중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처"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청의 정무직(도지사 1명)의
정원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